

창원지방법원 2021. 4. 21 선고 2021가단1007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4. 2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8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1993. 12. 6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0. 10. 19. 접수 제12675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예지희

별지